

## 사용자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의무 안내

-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  
-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시기 및 대상
  - 신고시기 :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
  - 신고대상
    - 사업장 명칭, 사업장소재지, 우편물수령지, 전화번호, FAX번호,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 등
  
- 신고방법 : 웹EDI, 팩스, 우편, 내방 등
  
- 신고서류
  - 제출방법 : 사용자가 『사업장(기관)변경신고서』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
  - 서식경로 : 공단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⇒ 민원여기요/사업장민원/사업장신고서식
    - ※ 대표자(사용자) 변경 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,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등 관련 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
- 기타사항
  -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,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건강보험 웹EDI 가입 방법안내

■ 건강보험 웹EDI를 이용하면 신고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- 건강보험 웹EDI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전자 민원서비스로 방문·우편·팩스보다 간편합니다.
- 고지서,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을 제공하여 건강보험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### ■ 웹EDI 가입방법 안내

1. 홈페이지 화면: <http://nhis.or.kr>(포털에서 '국민건강보험공단' 검색)



☞ ①회원가입 → ②사업장 → ③분야별업무사이트 → ④EDI 서비스화면이동

2. 웹EDI 화면: <http://edi.nhis.or.kr>(포털에서 '건강보험 EDI' 검색)



☞ ⑤ 공동인증서등록 → 사용자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(홈페이지회원가입)

⑥ 로그인 → ⑦ 전체서식 메뉴에서 신고서 선택

※ ①사업장회원가입 선택 시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

## 건강보험 사업장신고서 자동화 처리시스템(QR) 안내

- **세무·회계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접수내역, 근로자별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- **'공단(접수) 신고 기관선택'을 '국민건강보험공단'으로 선택해야 우리 공단으로 수신됩니다.**
- **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간**
  - 직장가입자 근로자: 2022. 1. 27. ~ 3. 10.까지
  - 개인사업장 대표자
    - 일반사업장: 2022. 5. 12.~ 5. 31.까지
    - 성실신고사업장: 2022. 5. 12.~ 6. 30.까지
- **접수증과 처리결과를 제공하여, 수입하고 있는 업체의 4대보험 업무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**

작성가능 신고서 목록			
4대 공통	•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	공단 고유	• 보수총액통보서(연말정산)
	•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		• 피부양자 자격(취득·상실) 신고서
	•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		• 직장가입자(근무처·근무내역) 변동신고서
	• 사업장(기관) 변경 신고서		•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
	• 사업장(기관) 탈퇴 신고서		•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
	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		•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
			•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

###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의 경우

QR공단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타 공단까지 모두 전송됩니다.

## 자격득실확인서·납부확인서 발급채널 안내

### 스마트폰 활용, The건강보험(모바일 앱)에서 건강보험 증명서를 즉시 팩스전송 가능합니다.

- 발급가능 증명서: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, 보험료 납부확인서, 보험료 완납증명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

#### <앱 설치하는 법>

##### 1. QR코드로 설치

안드로이드 폰	아이폰
	

##### 2. 구글 Play스토어(안드로이드)/앱 스토어(iOS)에서 'The건강보험' 설치

### 인터넷 활용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

- (개인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 접속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증명서 발급·확인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세부사항 선택 및 조회 → 출력 또는 팩스전송
- (사업장)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<https://si4n.nhis.or.kr>) 접속 → 사업장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→ 제증명발급 → 증명서 발급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 → 세부사항 선택 및 조회 → 출력

###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

- 2017. 12. 29.부터 건강보험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
- (발급대상) 총 7종
  - (건강보험 자격확인)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
  - (건강보험 납부확인서)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,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,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
  - (국민연금 납부확인서)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,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
- (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) 전국 주민센터, 지하철역 등 ... 「정부24」에서 확인 가능
  - 정부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 → 민원서비스 → 무인민원발급안내 → '설치장소' 확인

## 공단방문 없는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방법 안내

**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,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증명서를 공단방문 없이, 대기시간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**

### ○ 홈페이지 발급 안내 :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필수

☞ 접속방법

- ① **(개인)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** → 공동인증 로그인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증명서 발급/ 확인 → 증명서 발급 처리(출력, 팩스)
- ② **(사업장)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https://si4n.nhis.or.kr)** → 사업장 공동인증 로그인 → 제증명발급 → 증명서 발급 → 조회 및 발급 클릭 → 증명서 발급 처리(출력)
- ③ **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** → 공인인증 로그인 → 메뉴-서비스 → 신청·조회·발급 클릭 →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→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

### ○ 모바일 앱 발급 안내 :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필수요

☞ 접속방법

- ① **The건강보험(모바일앱)** → The건강보험(앱) 핸드폰에 다운로드 실행 → 증명서 → 증명서 발급·확인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하여 로그인 후 팩스발급 신청
- ② **정부24 앱(전자증명서 발급 가능)** → 정부24 핸드폰 다운로드 후 실행 및 공동인증 → 메뉴-서비스 → 신청·조회·발급 클릭 →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→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

### ○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안내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, 공공기관, 은행,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본인 지문인식 후 공단 제증명서(7종) 발급 가능

☞ 설치장소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검색

### ○ 전화[공단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 ARS] 발급 안내: AI 상담사를 통한 '스스로 발급 서비스'로 대기 시간 없이 발급 가능(보이는 ARS 선택 시 24시간 발급 가능)

☞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 전화 → 증명서 발급 서비스(음성 ARS, 보이는 ARS) → 신분증 정보 확인 → AI 상담사 개인 고유정보 확인 → 증명서 발급

## 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안내

### ■ 건강 및 연금보험료 완납(납부) 증명 제도란?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, 사업장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완납(납부)증명서를 계약대금 지급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제도입니다.
  - 제출의무자 :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

### ■ 관계법령

-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, 시행령 제47조의3 ... 2016. 8. 4. 시행
- 국민연금보험법 제95조의2, 시행령 제70조의2내지 제70조의4 ... 2015. 12. 23. 시행

### ■ 계약범위 및 제출서류

- 계약의 범위: 물품의 공사·제조·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지급받는 모든 계약
- 제출서류: 건강·연금보험료 완납(납부)증명서

### ■ 완납(납부)증명서 발급 방법

- 법인사업장: 방문, 팩스, 인터넷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) 등
- 개인사업장: 방문, 유선(고객센터, 지사), 인터넷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) 등
  -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주소: <https://si4n.nhis.or.kr>
  - 공단홈페이지 주소: 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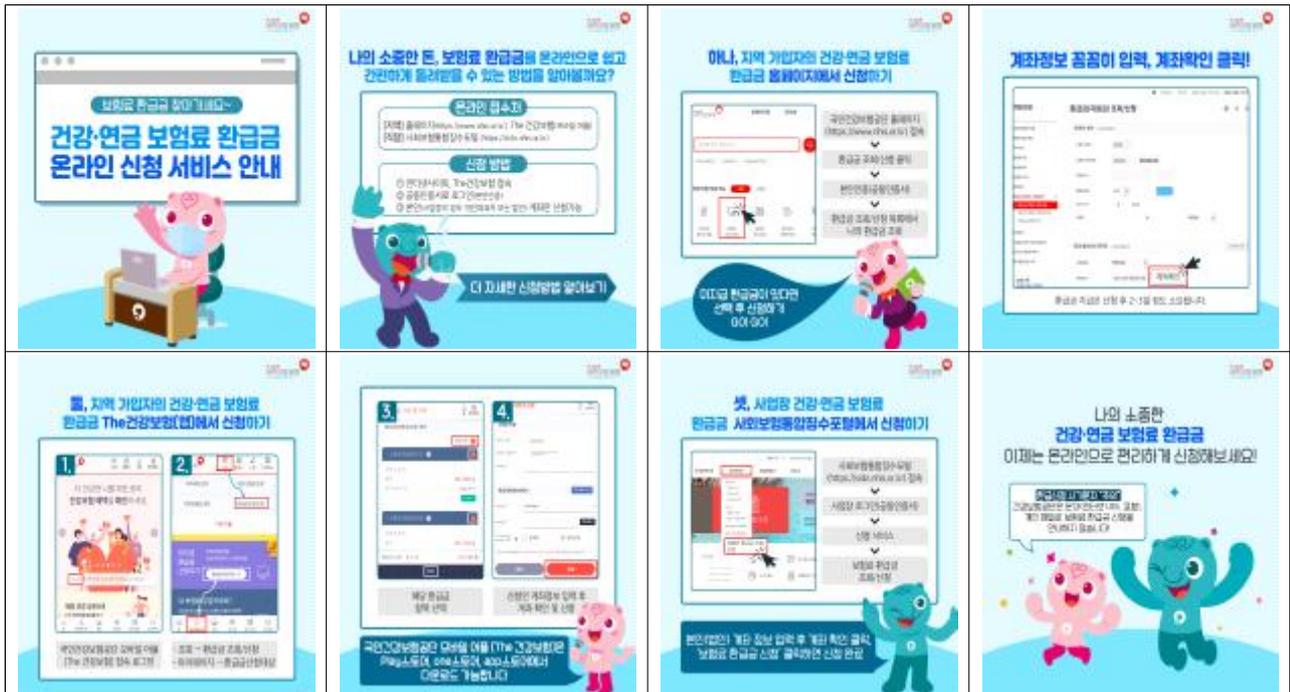
### ■ 문의전화 : ☎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

## (건강·연금)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 온라인신청서비스 안내

■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, 이중납부·보수월액변동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사업장 고객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였음을 안내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인터넷 주소 :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 > 로그인 후 초기화면 > 신청서비스 > 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
- 대상 : 건강·연금 적용(탈퇴) 사업장
  - ※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나 공동인증서가 만료된 폐업사업장 또는 공동대표자 사업장(대표자 모두 동의 필요)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로 방문, 팩스 등으로만 신청 가능함
- 서비스 내용 : 보험료 환급금 조회, 신청, 신청내역 확인
- 신청계좌 : 본인(개인대표자, 법인) 계좌만 신청 가능

### < 보험료 환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화면설명서 >



## 국민토론평 운영 안내

### 2022년 제1차 국민토론평 운영

- 운영주제: '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 활성화'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
- 운영기간: '22.3.1. ~ 3.31.
- 참여대상: 별도 인증절차 없이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
- 참여자 혜택
  - 우수의견: 10명 내외 우수의견 3만원 상당 포상
  - 경품추첨: 60명 내외 추첨 5천원 상당 경품 제공
- 참여방법: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(The건강보험) 접속하여 자유형식 의견 개진
- 참여경로: 홈페이지 메인 > ❶ 국민과 함께 > ❷ 국민참여 > ❸ 국민토론평 > ❹ 토론평 참여

홈페이지: 포털에서 '국민건강보험공단' 검색

The screenshot shows the NHIS website navigation. The breadcrumb trail is: 국민과 함께 > 국민참여 > 국민토론평 > 토론평 안내. The page title is '토론평 안내' (Forum Announcement). On the left sidebar, the navigation path is: 국민참여 > 국민토론평 > 토론평 안내.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four informational boxes:

- 복제·전송·편집에 관한 사항**: 토론평을 이용하여 작성된 주제는 토론평을 구성하는 콘텐츠 자체가 되는 것이므로 운영을 위해서 복제, 전송, 편집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
- 지식 재산권·저작권에 관한 사항**: 회원은 토론평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지식 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출판·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**: 회원은 토론평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지식 재산권 토론평을 이용하여 작성된 주제와 토론에 대하여 출판, 2차적 저작물의 작성시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주제 작성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홈페이지 글 등록에 관한 사항**: 광고성 글, 인신공격, 저속한 표현, 비방, 주제와 관련 없는 글 등 홈페이지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At the bottom, a notice states: '토론평 주제 현재 진행 중인 토론 주제가 없습니다.' (There are no forum topics currently in progress.) A red button labeled '토론평 참여' (Participate in Forum)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.

※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 메인 ❶ 전체메뉴 > ❷ 고객센터 > ❸ 국민참여 > ❹ 토론평 참여

- 바로가기 링크: <http://www.nhis.or.kr/nhis/together/retrieveForumList.do>

##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

### ■ 포상금 제도

-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양도·대여 및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### ■ 신고 대상

- 가족·지인·제3자(모르는 사람) 등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양도·대여 및 도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(부정사용자)

### ■ 신고 장소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「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조사담당자」

### ■ 신고 방법

- 팩스·우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고
  - ※ 건강보험 고객센터(☎1577-1000)에서 신고상담 시 해당 관할지사 안내, 필요시 지사 대면조사 실시
- 신분증명서류, 사실 입증자료 및 '보험증등 부정사용 신고서'를 작성하여 제출

### ■ 포상금 지급대상

- 부정사용자를 공단에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한 것이 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확인되어 부정사용자에게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 지급
  - ※ 자신의 보험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제외

### ■ 포상금액

- 부당이득 징수금액의 10%~20% 내에서 최저 2천원 ~ 최고 500만원

##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 처벌규정 강화 안내

■ 시행일: 2019. 10. 24.

### ■ 부정수급자

- 가족·지인·제3자(모르는 사람) 등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양도·대여 및 도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

### ■ 처벌 수준 강화

- 기존 "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"에서 "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"으로 처벌 강화

### 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

(개정일: 2019.4.23.)

개정 전	개정 후
<p><b>제115조(벌칙)</b>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	<p><b>제115조(벌칙)</b></p> <p>④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

※ <2019.4.23.> 법률 개정 시행 후, 제115조(벌칙) 제3항 신설<2020.12.29.>로 종전 제3항 규정은 제4항으로 이동.

##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안내

### ■ 국외로 출국한 다음 날부터 국외체류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.

-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'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'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(처방)을 받을 수 없습니다. (건강보험법 제54조)
  - 다만,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(처방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■ 국외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(처방)을 받은 경우 공단부담금을 징수합니다.

-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로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(처방)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. (건강보험법 제57조)

### 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, 해외 출국여부를 확인합니다.

-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연계를 통해 출입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개선('21.11.25.)하였습니다.
  -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매일 연계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출국 증으로 조회되는 경우,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진료 및 처방 가능합니다.
  - 입국 당일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###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- 질병·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,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
### 지원대상 선정기준

- 지원질환: (입원) 모든 질환 (외래) 중증질환(암, 뇌혈관·심장·희귀·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, 중증외상)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(소득하위 50%이하) 대상
- 재산기준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
- 의료비부담수준: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
(2022.1.1. 이후 진료개시일 기준)

소득기준	의료비부담수준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
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	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5% 초과

※ 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분인부담금 ⊕ 전액본인부담금 ⊕ 비급여 ⊖ 지원제외항목

### 지원범위

- 지원일수: 질환별 입원,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(투약일수 제외)
- 지원금액: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(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~80% 범위 차등 지급  
※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

지원금계산법 (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⊕ 전액본인부담금 ⊕ 비급여 ⊖ 지원제외항목)  
⊖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보험 수령금 등) ⊗ 50~80%

### 지원제외항목

- 미용·성형, 특실이용료,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
-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계약에 따라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(보험금)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(보험금)·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

### 신청 및 문의

- 신청 방법: 환자(또는 대리인)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- 신청 기간: 퇴원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
- 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 
공단 홈페이지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 > '재난적의료비지원 안내' 참고

##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

### ■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

-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·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

### ■ 진료비 본인부담

- 일반진료: 외래 30~60%, 입원 20%
- 산정특례: 입원·외래 구분없이 0~10%
  -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 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진료에 적용
  - ※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 본인부담, 식대, 2~3인실 입원료 등 제외

### ■ 대상 및 내용

-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·난치성질환, 결핵, 잠복결핵감염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
구분	특례 적용기간	본인부담률
암	5년	5%
뇌혈관질환	최대 30일(입원)	5%
심장질환	최대 30일(입원·외래) (복잡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)	5%
희귀질환	5년(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)	10%
중증난치질환	5년	10%
결핵	결핵 치료기간	0%
잠복결핵감염	1년(6개월 연장)	0%
중증화상	1년	5%
중증외상	최대 30일(입원)	5%
중증치매	5년	10%

### ■ 산정특례 등록 방법

-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, 담당의사가 발행한 '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'를 해당 병·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
  - ※ 뇌혈관·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요양기관에서 적용

### ■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

- 국민건강보험 지사 본인 내방 열람(신분증 지참)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공동인증 로그인⇒ 민원여기요 / 개인민원 / 보험급여 /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
- The건강보험앱⇒ 전체메뉴(화면아래) / 민원여기요 / 조회 /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

##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안내

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

- 제도시행일: '22년 1월 1일[**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** 확대제도 적용(신청일자 기준, 소급적용 불가)]

### 주요 내용

구분	현행 ( ~21.12.31.까지)	확대 후 (22.1.1.이후~ )
지원 대상	·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· <b>1세 미만</b> 영유아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)	·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· <b>2세 미만</b> 영유아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)
지원 금액	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/ 다태아 100만원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	임신 1회당 일태아 <b>100만원</b> / 다태아 <b>140만원</b>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
지원 항목	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	<b>모든 진료비</b>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
사용 기간	이용권 발급일 후 ~ 분만예정일, 출산일(유·사산일)부터 <b>2년</b>	이용권 발급일 후 ~ 분만예정일, 출산일(유·사산일)부터 <b>2년</b>

- 기 등록된 임신·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**취소 삭제 불가**(당일 신청 건 포함)합니다.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**자동 소멸**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**사용 불가**합니다.

### 요양기관 확인사항

- **요양기관**에서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 **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'38' 승인코드 입력**
  - 5만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
  - 입원·외래 진료 구분 없이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(사용 한도, 사용 횟수 제한 없음)
  - 카드 결제 시 **2021년12월31일 이전** 신청자(**임신·출산·유산 관련 진료비**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)와 **2022년1월1일 이후** 신청자(**모든 진료비**)의 진료비 사용범위 **구분 결제**

### 신청방법

- 방문
  -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확인(요양기관 직인, 담당의사 서명 등)이 기재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 후 공단, 카드사(은행)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 신청
- 온라인
  - 요양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(요양기관정보마당)에 임신정보 등록하면 공단·카드사(은행)·'정부24' 홈페이지, 앱 또는 전화 신청

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>) ▶ 정책센터 ▶ 국민건강보험 ▶ 보험급여 ▶ 의료비지원 ▶ 임신·출산급여 ▶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신청문의:**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## 2022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제도안내

###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대상 연령 및 수검 가능 시기 확대('19년~)

- 20~30대의 심각한 질환인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20~30대의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검진항목을 확대 하였습니다. (40, 50, 60, 70세 ⇒ **20, 30**, 40, 50, 60, 70세)
-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수검 가능 시기는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.('21년~)

검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일반건강검진</b> : 비사무직(매년), 사무직(2년에 1회) ※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(짝, 홀수)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('18년~) (단,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)</li> <li>· <b>암검진</b> : 출생연도(짝·홀수)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						
	암 종	위 암	간 암	대장암 (분변잠혈검사)	유방암	자궁경부암	폐암
	연 령	40세 이상	40세 이상 고위험군	50세 이상	40세 이상 여성	20세 이상 여성	54세~74세 고위험군
	검진주기	2년	6개월	1년	2년	2년	2년
	※ <b>암 산정특례자</b>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(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)						
검진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일반건강검진(암검진 포함) : 2022.12.31. 까지</b></li> <li>·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"반응있음"과 위장조영촬영결과 "암의심"자 2단계 암검진 : 2023.1.31. 까지</li> </ul>						
실시절차	<b>공단</b> 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송부 ▶②-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	<b>사업장</b> ②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▶②-1 <b>대상자 변경</b> 이 필요한 경우 「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제외)신청서」 관할지사로 제출 ④ 일반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,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까지 받도록 안내	<b>검진기관</b> ③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실시 ▶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	※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 <b>[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진표 작성시 검진기관에 제공 가능]</b>			
결과통보	·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<b>15일 이내</b> 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						
안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<b>11월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</b> (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)</li> <li>· 신규입사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사업장에서 <b>실시절차 ②-1</b>처리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</li> <li>· 암검진은 대상자 주소지로 검진표(간암, 폐암 표기) 개별 송부함</li> <li>· <b>사업장에서 국가검진을 포함하여 추가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임을 반드시 안내하여 이중검진 방지</b></li> <li>·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시 개별로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를 <b>"종합검진실시"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</b></li> </ul>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음식(단, 대장암(분변검사)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)</li> <li>·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</li> <li>·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생리 전·후 2~3일은 건강검진을 피하시기 바람</li> </ul>						

『국가 건강검진, 나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』 문의 (고객센터)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

##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안내

###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

검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</li> <li>※ 19세 학교 밖 청소년 중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검 가능</li> </ul>										
검진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2. 1. 1. ~ 2022. 12. 31. 까지</li> <li>※ 확진검사의 경우 사업연도 다음해 3.31. 까지</li> </ul>										
검진비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본검진</th> <th>선택검진</th> <th>확진검사</th> <th>비용부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용</td> <td>42,380원~83,740*원</td> <td>93,810원~103,610*원</td> <td>12,130원~172,080*원</td> <td>전액 국고 부담 (본인부담 없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상담 및 행정비용 공휴일 수가(30%) 적용하여 반영함</p>	구분	기본검진	선택검진	확진검사	비용부담	비용	42,380원~83,740*원	93,810원~103,610*원	12,130원~172,080*원	전액 국고 부담 (본인부담 없음)
구분	기본검진	선택검진	확진검사	비용부담							
비용	42,380원~83,740*원	93,810원~103,610*원	12,130원~172,080*원	전액 국고 부담 (본인부담 없음)							
검진주기 및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진주기 : 3년마다 실시</li> <li>· 검진항목 : 상담 및 진찰, 요검사, 혈액검사, 영상검사, 구강검진 등</li> <li>- 기본검진 : 간염검사(B형 및 C형), 구강검진 등 18개 항목</li> <li>- 선택검진 : 매독혈청반응 및 HIV항체, 성매개감염(클라미디아, 임균) 등 3개 항목</li> <li>- 확진검사 :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판정자(고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, 이상지질혈증, C형간염, 매독)</li> </ul>										
검진절차											
결과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주소지(문진표 작성 주소지)로 직접 결과통보</li> <li>※ 통보방법에 이메일을 선택한 경우 문진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결과통보서 발송</li> </ul>										

문의 : 청소년전화(유선: 1388, 핸드폰: 지역번호+1388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

## 2022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안내

###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

####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란?



영유아 건강검진은 **생후 14일 부터 71개월까지**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.

**14~71**

#### ▶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.

문진과 진찰, 키, 몸무게,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, 건강교육, 발달평가 및 상담을 통해 영유아기 성장, 발달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.

#### ▶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.

**개인 비용 부담없이**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검진 때마다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, 영양교육 등 아이의 질병에 맞는 유용한 육아지침 및 건강교육을 포함한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.

#### ▶ 만족스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발육지연, 과체중 등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진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조기치료 할 경우에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영유아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검진기관에 지급 ➔ 본인부담 없음

※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용은 국기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
#### 영유아 건강검진의 필요성



201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100명 중 약 15명이 주의,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. 다행히도 영유아의 건강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화가 가능하지만, 시기를 놓치면 치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**영유아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.**

####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중요

- 1~9세 소아의 10대 사망원인 중 운수사고 2위, 추락 6위, 익사 7위를 차지해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아지도가 필요합니다.



- 영유아 건강검진시 마다 보호자에게 **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**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.

### 검진 주기 및 검진 항목

건강검진	문진, 신체계측	신체진찰	건강교육 및 상담	발달평가 선별검사	시력검사
1차 (14~35일)	○	○	○		
2차 (4~6개월)	○	○	○		
3차 (9~12개월)	○	○	○	○	
4차 (18~24개월)	○	○	○	○	
5차 (30~36개월)	○	○	○	○	
6차 (42~48개월)	○	○	○	○	○
7차 (54~60개월)	○	○	○	○	○
8차 (66~71개월)	○	○	○	○	○

### 영유아 건강·구강 검진 절차

-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(The건강보험)에서 문진표/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이 가능하며, 발달선별검사는 9~71개월에 작성합니다.
-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, 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하고 검진을 받습니다.
-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습니다.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- 검진은 해당 검진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. (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으며,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)
- 생후 14~35일 영유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대상자 사전 등록 후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고객센터 ☎1577-1000)

구강검진	진찰 및 상담	치아검사	기타 검사 및 문진	구강보건교육
1차 (18~29개월)	○	○	○	○
2차 (42~53개월)	○	○	○	○
3차 (54~65개월)	○	○	○	○

「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내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세요!」 문의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

## 공단 앱 「The건강보험」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안내

### 직원들의 건강을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세요!

♣ 대상 :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결과 보유자

♣ 서비스 내용 : 건강정보, 오늘의목표, 맞춤형 건강UP메세지 등 제공

♣ 가입방법 : 앱 스토어에서 「The 건강보험」 다운로드 → 로그인  
→ 전체메뉴 → 건강iN → 대사증후군관리 오늘의목표  
→ 사전가입정보입력 및 설문작성 완료  
→ 건강관리 24주 프로그램 시작



■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단 앱 '건강관리 24주 프로그램'을 소개해 주세요.^^

◆ 이벤트도 진행 중이오니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## ◆ 이벤트 확인 방법

「The건강보험」 홈화면 이벤트 배너 클릭 > 팝업화면 이벤트 상세 내용 확인 후 참여

◆ 이벤트 주제별 기간 내 적립한 건강포인트 상위 대상자 추천하여 소정의 상품 지급

※ 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은 꼭 해당 이벤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
#### ◆ 포인트 적립방법

- ① 걷기 운동(5,000보 · 10,000보 달성) ... 보수계 및 기기연동
- ② 건강 기록(운동 · 식사 · 체중 · 혈압 · 혈당 기록), 주간 건강 리포트 확인
- ③ 맞춤건강정보 · 건강UP 메세지 조회, 수면 기록, 오늘의목표 도달, 종합평가

※ 수신된 건강정보는 제공된 날짜에 읽어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.

■ 포인트 확인: 전체메뉴 > 건강iN > 건강관리 > 건강포인트

☞ **사업장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건강위험지표를 활용 가능**  
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(<http://nhiss.nhis.or.kr>) 접속(회원가입 / 로그인)  
→ 의료이용지표 이용신청 → 공단승인(빅데이터실) → 지표조회 가능

##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

### 금연! 혼자서는 어려워도 공단의 '금연치료 지원사업'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!

#### ■ 지원대상

-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

#### ■ 지원내용

- 8주~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
-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 비용 지원
- 병·의원, 약국 3번째 방문부터 본인부담금 면제

#### ■ 금연치료 기관찾기

-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건강iN → 검진기관/병원찾기 → 병(의)원정보 →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
- 공단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 → 건강iN → 검진기관/병원찾기 → 병(의)원찾기 → 특성병원 →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

#### ■ 지원절차

-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·방문 ⇒ 금연치료 참여등록 ⇒ 진료상담 ⇒ 금연치료 의약품·보조제 처방 ⇒ 약국방문 ⇒ 금연치료 의약품·보조제 구입

#### ■ 인센티브

-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
  - (이수기준) 6회 진료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
  - (인센티브) 1~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인센티브 신청방법 : (지급신청서) 우편·팩스, 유선

#### ※ 인센티브 신청 시 유의사항

- 지급계좌는 국내 시중은행이어야 합니다. (외국계 은행 제외)
- 압류방지계좌(행복지킴이통장)로 입금 희망 시 통장사본 함께 제출 (유선접수 불가)
- 예금주는 「인센티브 받으시는 분」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이 아닌 경우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을 해당지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금연민원센터(033-811-2090) 또는 해당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사업장 근로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안내

### 추진배경

- 건강검진 결과(심뇌혈관 질환 발병)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가 수검자 10명 중 7명으로, 특히 사업대상자 중 직장가입자가 다수 차지
-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관리의 필요성 요구

### 목적

- 사업장 근로자 스스로 검진결과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변화와 생활습관의 위험요인을 알고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

#### ※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(대사증후군) 사업

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 요인인 복부비만, 높은 혈압, 높은 혈당, 높은 중성지방혈증,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등 5가지 중에서 위험요인 3가지 이상인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관리 필요

### 서비스 내용

-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... 사업장 비용부담 없음
  - 대상: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
  - 내용: 사업장 근로자 대상 전문 보건교육, 맞춤형 건강상담, 신체활동 프로그램, 건강부스, 중재자료 제공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    - ① 전문가를 통한 보건교육: 3~9월 ... 신청 우선 순(신청이 많으면 다음 연도에 우선 선정)
    - ② 건강검진 결과 개별상담: 1~12월(연중)
    - ③ 희망자에 한해서 자가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무료대여(4주간)
    - ④ 건강생활을 위한 자가관리지침서등 제공
    - ⑤ 신체활동 프로그램: 운동강사(최대 4회) ... 신청 우선 순
    - ⑥ 건강부스 운영: 체성분 측정, 혈압·혈당 측정 등 보건교육을 신청할 경우 진행 가능
 ※ 지역 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
- 사업장 건강위험지표 안내문 제공 ... 해당 사업장별 근로자 검진결과 분석자료
  - 안내문 제공지표: 대사증후군 발견율, 권장신체활동 수행률, 비만율, 음주율, 흡연율, 고혈압 의료이용률, 당뇨병 의료이용률, 이상지질혈증 의료이용률 등
  - 검진결과를 연도별로 비교·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 시각화하여 구현 ... 동종 업종(규모)별 평균, 연도별 추이

신청: 대표전화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 →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연결

##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안내

###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도란?

-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, 전문 간호인력(간호사, 간호조무사, 간병지원인력)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

###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

-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**간병 부담(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) 감소**  
 - 간병비 경감 ... 환자비용 부담 1일 68,470원(75.4%) 감소

- 일반병동 입원료: 90,810원 (2022년 종합병원 간호3등급 6인실 기본입원료×본인부담 20% 기준)
- 통합병동 입원료: 22,340원 (2022년 종합병원 간호사 1:10, 간호조무사 1:30×본인부담 20% 기준)  
 (본인부담 입원료는 입원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)

-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**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**
- 일반병동 대비 약 2배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로 **고품질 입원서비스 제공**
- 병동 환경 개선 등 **환자 중심의 쾌적한 병실환경 제공**

###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확인 방법

####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

건강iN → 검진기관/병원찾기 → 병(의)원 정보 →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

#### ② 모바일(The건강보험 어플)

건강iN → 검진기관/병(의)원 찾기 → 병(의)원 찾기 → 특성병원 →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원 → 상세검색

### 제도 문의
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료: 발신자부담)
-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(033-736-4331~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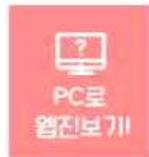
## 공단 앱 「장기요양웹진」 행복한 동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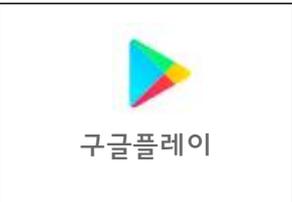
### 장기요양웹진 <행복한 동행> 구독 방법은?



- 구글플레이에서 '장기요양웹진'  
검색 > 설치 > 실행하기

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
접속 > 알림·자료실  
> '장기요양보험소식지'



##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제도 안내

### 장기요양기관

- 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'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,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

### 신고·포상금 제도

-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, 징수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사실과 관련한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

### 신고내용

-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·부당행위 일체

### 신고인의 범위

- 장기요양기관 관련자, 장기요양기관 이용자, 그 밖의 신고인

### 신고 방법

#### ○ 실명 신고

- 내방, 우편, 신고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

#### ○ 실명 및 익명 신고

- 인터넷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[www.longtermcare.or.kr]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) / 민원상담실 / 포상금제도안내 /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안내 / 신고하기 클릭
- 모바일앱: 「The건강보험」 모바일앱 / 고객센터 / 신고센터 /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

### 포상 금액

-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원,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
  - ※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- ※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.